

도이치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

추가된 내용:

환매연기에 대한 문구 추가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1월 4일 환매연기되었으며,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환매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투자한도, 투자비용 및 운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쪽 요약(핵심설명서) II.투자정보, 1.투자목적,
7쪽 제1부 투자전략의 기본정보 II.투자정보 2.주요투자전략 ,
14쪽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수익자에 대한 정의 추가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2008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도이치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의 수익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6쪽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투자신탁의 개요 8.기타
9쪽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I.투자정보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환매연기 후속조치에 따른 약관변경 내용 추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투자한도 및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약관변경 시행일 2009년 1월 9일)

(17쪽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3. 투자대상)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약관변경 시행일 2009년 1월 9일)
(18쪽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4. 투자제한)

환매연기에 관한 내용 추가

※ 동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간접투자재 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 65 조, 시행령 제 62 조 제 2 호 가목에 의거 2008년 11월 4일부터 별도의 공지일까지 환매연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약관 제21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⑥ 환매연기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자산 등의 매각 또는 만기보유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액: 발생한 분배금 중 자산운용회사가 지급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익증권 좌수 보유비율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
2. 지급일: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날
3. 자산운용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배금 지급일 이전 제1영업일까지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한다.

(19쪽, 제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2.환매관련 유의사항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이익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추가

※ 자세한 내역은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2)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자산운용보고서에 관한 내용 추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투자신탁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후속조치에 따른 약관변경 사항)

(28쪽,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I.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 보고서에 관한 내용 추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투자신탁은 수탁회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후속조치에 따른 약관변경 사항)

(28쪽,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I.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3)수탁회사보고서)

2)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 변경

변경전	변경후
4등급	2등급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위험수준

설정당시 이 투자신탁의 등급은 4등급이었으나, 그 후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변동과 환매연기 조치 시행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쪽, 요약(핵심설명서) II.투자정보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동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간접투자재 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제 65 조, 시행령 제 62 조 제 2 호 가목에 의

거 2008년 11월 4일부터 별도의 공지일까지 환매연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설정 당시 동 투자신탁의 등급은 4등급이었으나, 최근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변동과 상기 환매연기 조치 시행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쪽,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I.투자정보,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상기 내용 추가 및 관련 표, 그림 수정 [4등급->2등급])

3) 투자신탁의 보수 변경

변경전			변경후	
구분	지급비율(연간, %)		구분	지급비율(연간, %)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150%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00%
판매회사 보수	Class A	연 0.515%	판매회사 보수	연 0.00%
	Class I	연 0.000%	수탁회사 보수	연 0.00%
	Class P	연 0.40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0%
	Class U	연 0.200%	기타 비용	연 0.01%
	Class C-e	연 0.412%	총보수·비용	연 0.01%
수탁회사 보수	연 0.03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25%			
기타 비용	연 0.013%			
총보수·비용: 연 0.733% (Class A), 연 0.218% (Class I), 연 0.618% (Class P), 연 0.418% (Class U), 연 0.63% (Class C-e)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환매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9년 1월 9일자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 보수를 0%로 변경합니다.

주)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5쪽, 요약(핵심설명서), III.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0쪽,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II.수수료, 보수, 과세,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